

지방세 전자고지송달과 도달의 입증책임

전 동 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기관

1. 의 의

그 동안 지방세 전자고지송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지방세의 인터넷 전자고지제 시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제도는 고지서류의 도달과 관련된 제도정비 등이 선결요건과제이었으나 이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전자고지송달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세 전자고지송달제도는 IT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세업무의 전반적인 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하는 제도이며 국세의 경우 2004년도부터 이미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 전자고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중에는 지방세 전자고지송달의 경우 도달에 관한 문제이다. 도달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상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당해 전자우편주소상에 수신된 메일을 요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전자고지송달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거 시행하는 만큼 도달에 대한 문제를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확실하게 정하여 시행하여야 추후에 전자서류의 부도달 문제를 제기한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도달의 원인이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도달이 된 경우에는 도달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우편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전자고지한 사실을 스팸메일로 인식하여 삭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아니므로 도달로 추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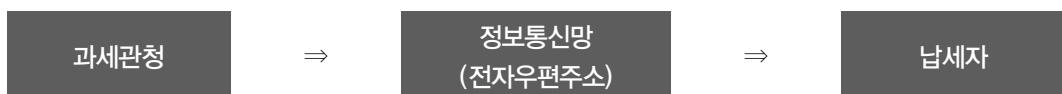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전자고지송달에 있어서 도달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의 입증책임으로 볼수는 없으며 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등의 사유로 부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납세자가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은 일본에서 도입되고 있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도달추정제도인데, 이는 납세고지서가 우편송달 후 정기분 지방세(예 : 재산세 등)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면 1차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하는 추정효력을 인정하며, 납세자가 미도달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부도달로 추정하고, 납기개시일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미도달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기개시일에 납세고지서가 부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2. 지방세법상 전자고지송달체계

(1) 구성요소

지방세 전자고지송달 체계의 구성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지방세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중심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자가 전자서류를 송달받게 되는 체계이다.



(2) 지방세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주소

(가) 지방세 정보통신망

지방세정보통신망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조제3항 법 제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제1조제3항관련)

항 목	기 준
목 적	지방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전자적으로 송달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범 위	1.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2.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통지서 3. 신고안내문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한 지방세 송달서류
도달일자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고 지 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운영하는 전자우편주소
자료의 전송	지방세납세고지 등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나) 전자우편주소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경우 전자우편주소는 개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포털사이트 상의 전자우편주소이어야 하는 것이다.

(3)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지방세전자고지 송달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5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송달은 일정요건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고지송달을 할 수가 없으며 신청이 없이 이를 전자고지송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달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전자고지송달의 신청이나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한 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는 당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 등 지방세고지서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이나 전자고지의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고지서를 직권으로 부과징수를 할 수는 있으나 송달 방법에 있어서 전자고지송달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자우편주소등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점이 차이점이다.

(4) 전자고지송달의 범위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5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의6제1항에서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고지송달의 서류는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서류는 전자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도 서류송달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서류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류의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고지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전자고지송달 방법

지방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의 송달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고지송달의 경우 통신장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고지송달의 도달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고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등기우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1.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고지송달한 경우 당해 전자우편주소를 관리하는 기관 등에서 이를 스팸메일로 간주하여 폐기처리한 경우에는 사실상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스팸메일을 폐기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는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납세자는 사실상 전자고지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부도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3. 전자고지 송달의 도달 효력

(1) 송달주의와 도달주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가 있으나 민법에서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등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이 도달을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직접교부방법에 의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증서에 의하여 송달사실을 입증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자고지송달의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 등에 도달되어야 전자고지 송달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사례 고지송달의 도달여부 사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거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됨.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대법원 98두1161, 1998.4.10)

판례 고지송달이 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97누8977, 1998.2.13)

[참고 자료] 일본의 지방세송달제도

1. 부과징수방법(일본 지방세법 § 13)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세의 고지를 규정하고, 부과징수 또는 환부에 관련된 서류는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고지서의 도달추정 효력(일본 지방세법 § 20)

통상우편에 의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우편물이 통상도달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송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주고 있는데, 압류 등에 관련된 서류는 등기우편 등에 의하도록 함.

3. 납세자의 부도달 입증책임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미송달에 따른 가산금(일본은 연체금) 감액 등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짐으로써 명시한 사유 이외의 것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도달의 범위

지방세의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주소지 이외의 장소, 즉 사이버공간상의 주소에 송달하는 경우 그 납세자가 지정한 SITE에 도달한 경우 이를 송달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참조). 따라서 도달의 인식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자송달방법으로 서류를 송달 할 경우에는 도달의 상태는 전자우편주소 입력완료되거나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서류가 저장이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전자서류의 도달은 전자우편주소 등에 입력이 된 때에 동시에 도달된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열어 보아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서류의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송달대상 서류 이외의 서류를 전자 형태로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류의 도달 입증에 대하여는 과세권자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3) 도달의 효력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 등 전자서류 등을 송달되어야 할 장소인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 정보통신망에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송달장소인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송달하였다면 납세자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달의 효력도 없고 나아가 조세채무자의 주소를 통하여 조세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도달의 입증책임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문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여하간에 납세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인이 금치산자,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송달가능하며, 대리인에게는 도달의 효력이 발생되고 미성년자에게는 부도달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가 도달한 것을 주장하면 도달로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도달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

세권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입증하는 제도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여 납세자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아니면 등기우편에 의거하여 송달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시에는 도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배달증명이나 직접교부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의 구체적 확정이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고지송달을 한 경우에는 전자고지서의 송달입증책임도 과세권자에게 있는 만큼 입증방법은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거나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고지 송달한 납세자중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거나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료DB를 구축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판례 납세고지서 송달입증 책임문제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96누3562, 1996.6.28)

(1)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등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서 요건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확정은 납세고지서를 도달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당한 과세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에게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송달되었다는 입증책임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불이익이 되어 무효화되는 것이다.

판례 납세고지서의 송달 적법과 입증책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 96누3562, 1996.6.28)

(2) 공시송달의 적법에 대한 입증책임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송달 요건으로서 납세자에게 우선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서류수령사실의 거부, 송달곤란 사실, 사무소 등의 불분명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입증문제는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데 위와 같은 사유로 송달이 곤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판례 공시송달 적법과 입증책임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96누3562, 1996.6.28).

2.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92누13127, 1992.12.11).

(3) 과세자료근거에 대한 입증책임

과세관청은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 인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이는 과세관청에서는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하고 그에 따르는 입증책임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판례 과세자료와 입증(대법원 99두783, 1999.7.9)

토지 중 종합토지세비과세인 묘지로 사용되는 부분 가운데는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과 무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토지 중 유료로 사용되는 묘지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체가 위법함.

■ 참고자료 ■

지방세 정보통신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전자적으로 송달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고지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고지”라 함은 납세자에게 고지될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고지함”이라 함은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전자고지 자료를 수록한 장소로서 「전자정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내용이 저장되면 전자고지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저장 공간을 말한다.
4.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5.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6. “지방세 전자고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고시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말하며 인터넷 주소가 「www. ooo. go. 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성능관리”라 함은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제공하기 위하여 낮은 성능을 보이는 요소를 찾아 성능 개선을 수행하거나 성능 분석을 통해 성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장애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의 고장, 장애, 서비스 불능 상태 등 시스템의 장애 여부를 관찰, 진단, 보고, 제어,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 “백업관리”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되는 업무로서 적용대상은 시스템운영체계,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일반 파일(파일 시스템 포함), 로그파일 등으로 한다.

제3조(구축 및 운영)①지방세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는 별도의 전자고지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도의 전자고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개설 목적
2.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
3. 운영 계획
4. 사용 언어, DB, 프로그램 등
5. 기타 첨부사항

③ 홈페이지 시스템은 연중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능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유지관리 및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고지 이용신청) ①납세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고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인 “전자송달의 신청(철회)서”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의 신청(철회)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전자고지를 철회한 자는 철회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전자고지 대상) 전자고지 대상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로 한다.

제6조(전자고지 적용시기) ①전자고지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7조(전자고지 송달서류의 범위) ①전자고지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2. 지방세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3. 신고안내문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한 지방세 송달서류

제8조(전자고지 시기) ① 제7조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자고지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한다.

1. 지방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납세 고지할 때
2. 지방세과오납금환부금 결정이 있을 때
3.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송달할 때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한 지방세 송달서류를 송달할 때

제9조(전자고지 방법) ①전자고지는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제1항의 전자고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고지를 받을 자가 신청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음을 안내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열람·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치단체장은 지방세 납부고지 중 주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고지 송달) 전자고지 송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지정한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단체장은 그 내용을 자치단체 지방세 정보통신망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전자고지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당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치단체에서는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자치단체장은 전자고지 홈페이지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